

『2026년 부산 창업지원사업 유공자 시장 표창』 추천 대상자 신청 공고

창업 활성화 및 창업가의 사기 진작을 위해 「2026 부니콘 육성·지원 사업」 및 「2026 벤처·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중 우수 창업가를 발굴하여 부산광역시장 유공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,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0월

(재)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

1 표창 개요

- 표 창 명 : 2026년 부산 창업지원사업 유공
- 표창목적 :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·포상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
- 훈 격 : 부산광역시장
- 추천대상 : 4명
- 표창시기 : 2026년 12월 중

2 신청개요 및 제출서류

- 신청자격 : “2026년 부산 창업지원사업”에 참여하여 실적이 우수한 창업가
 - ‘2026 부니콘 씨드·빌드 육성사업’참여자(1명)
 - ‘2026 부니콘 부스트 육성사업’ 참여자(1명)
 - ‘2026 부니콘 지원사업’ 참여자(1명)
 - ‘2026 벤처·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사업’ 참여자(1명)
- 신청기간 : 2026. 10. 21.(수) ~ 10. 27.(화), 18:00까지
- 제출서류
 - ① [필수] (서식1)시장표창 추천대상자 신청서 및 (서식2)참여조서 각 1부
 - ② [필수]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▶ 공고일 이후 발급분, 대표자 포함

③ [필수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▶ 적용기간 : 2025. 1. 1. ~ 2026. 9. 30.

- 공고일 기준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, 해당기간의 세무계산서 제출, 2025년도는 재무제표 제출 가능

④ [필수]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원

⑤ [필수]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

⑥ [필수] (서식3)시장포상 체크리스트

⑦ [선택] (서식4)특별공적사유서

⑧ [필수] (서식5)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⑨ 특허, 인증서, 수상경력, 언론보도 등 창업실적현황 사본 각 1부

⑩ 회사연혁 및 대표자 프로필(자유양식) 각 1부

○ 제출방법 : 부산창업포털(busanstartup.kr)을 통한 접수

- 제출 시 첨부파일명은 '기업명_대표자명'으로 기재하며, 하나의 PDF 파일로 반드시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
- 서류 미비, 제출방법 미준수 등에 따른 불이익(향후 보완 불가)이 있을 수 있음

3 평가 및 선정방법

○ 평가요소 및 배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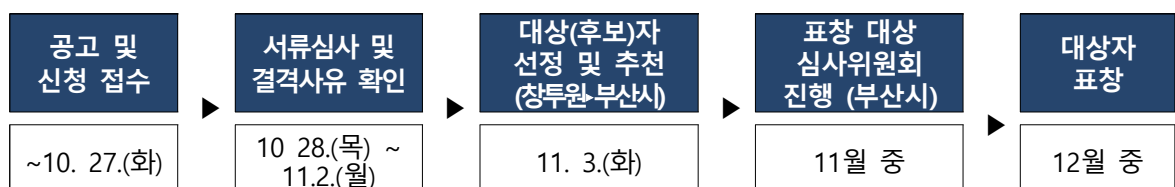
① 정량평가(반영비율 50%)

평가항목	평가지표	비고
6개	고용성과(15), 매출성과(15), 지식재산권(5), 인증서(5), 수상경력(5), 언론보도(5)	제출 서류 검토

② 정성평가(반영비율 50%)

- 부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(이전/향후), 향후 사업 발전 가능성,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도(행사 참석 및 적극성) 등 서술 내용 평가

○ 심사절차



4 문의처

○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혁신창업실 정연수 과장 (051-715-1798, jys@bsia.or.kr)

1. 포상 기준

가. 민간인(일반시민, 외국인, 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 직원, 공무원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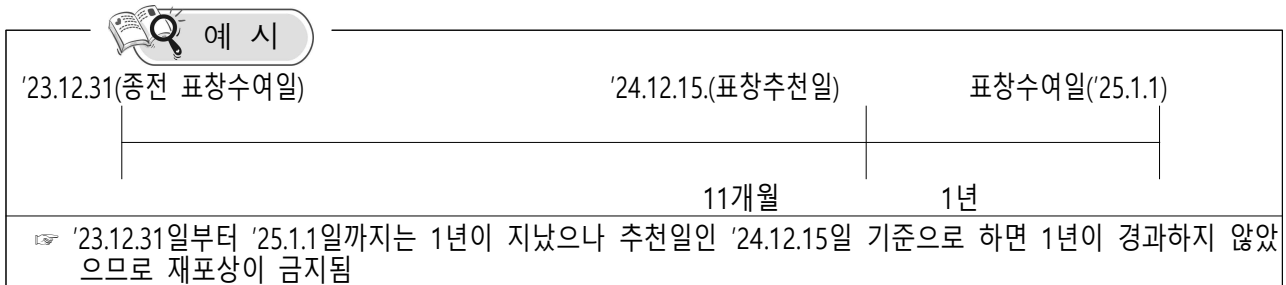
-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

2. 재포상 금지

가. 재포상 대상: 표창장만 해당 ▷ 상장, 감사장 제외

나. 기 준 일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*까지를 기준으로 함

* 제1공적심사위원회 담당부서(선임부서)에서 인사과로 포상추천 의뢰하는 날(공문시행일)을 기준으로 함



다. 대상별 재포상 금지

1) 민간인

- 1년 이내 시장 및 장·차관급* 표창을 수여 받은자는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, 정부포상(국무총리 이상), 장관표창 추천도 금지함

* 각 중앙부처 장·차관급 이상, 경찰청장(중앙○, 지방×), 소방총감, 검찰총장 등

- 정부포상(국무총리 이상)을 수여 받은 자는 2년 내에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※ 퇴직공무원 포상은 재포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음

※ 재포상 금지 예외

- 제안제도, 국내외 주요 대회 입상자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
- 의원면직, 명예, 정년 퇴직자, 대회에서 입상한 상장 수여자

3. 이중표창 금지 ▷ 정부표창규정 제2조

가. 기 준 일: 수여 일로부터 적용됨

나.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음

※ 예시

- 시장포상을 수여 받은 후 동일한 공적으로 정부포상(국무총리 이상), 장관표창을 받는 경우
ex)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(시장)으로 선발 된자가 정부포상, 장관표창을 추천하는 경우

4. 추천제한

가. 민간인(일반시민, 외국인, 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 직원, 청원경찰, 공무원 등)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
시장포상은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**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** 민원야기 우려,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해야 함

- 가)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나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행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된 경우 **추천 가능**
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- 2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3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
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
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나)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
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
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상 등기부 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
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
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
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4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
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
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
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
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거 체납 중인 자
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

-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- 7)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〈민간인 추천제한자 조회 방법〉

관 련 법	조회방법
수사·형사 처벌	▶ 시장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(서식10) 로 갈음
산업안전보 건 법	▶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 →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 → 검색창 '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' 입력
공정거래 관 련 법	▶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회사명 입력
근로기준법	▶ 고용노동부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조회
국세·관세 지방세법	▶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(http://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직접 조회 * 납세현황(체납액이 없다는 사실)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 - e하나로민원(바로가기)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> 상단 접근권한관리 메뉴 >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③ 이용사무명에 “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(국·관·지방세 체납여부) 확인” 입력 후 검색 > 검색결과에 이용사무명 “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(국·관·지방세 체납여부) 확인” 선택 ④ 열람권한 신청 후 각 기관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(분임보조)의 승인이 완료되면, ⑤ 정보열람 > 최초열람 > 공동이용 사무조회에서 이용사무명 “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(국·관·지방세 체납여부) 확인” 선택 ⑥ 열람가능한 구비서류정보 중 납세증명서 선택 > 사전동의 여부 선택 > 인적사항을 입 력하여 납세현황(체납액이 없다는 사실) 확인